

의안번호	2220217
의 퇴 인	윤준병의원
회 답 일	2026.8.5.
추계번호	26C3708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48조의4 신설 (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<u>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(이하 “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u>(제1항) 1. 구급차등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에 관한 정보 2.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 실시한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정보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) 3. 응급의료기관의 위치, 응급실 병상·의료진 현황 등 응급환자의 수용능력에 관한 정보 4. 그 밖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-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		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<u>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(제4항) -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(제5항)	재량규정
		-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누출·변조·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의 관리, 정보의 암호화, 접속기록의 보관 및 그 밖에 정보보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(제6항) -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전송의 범위·기준·방법과 그 밖에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8항)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48조의4 (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(안 제48조의4 신설)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등*의 위치·이송 중 환자상태·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전송장치·통신체계 구축·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시스템 구축·운영비 및 관련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※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,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함
- 다만, 개정안은 시스템에 포함될 정보의 범위(안 제48조의4제1항제4호)와 정보 전송의 범위·기준·방법 및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(같은 조 제8항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시스템의 구축 범위와 사양을 전제할 수 없으므로 소요 산정에 한계가 있음
- 또한, 보건복지부는 이미 같은 법 제15조¹⁾에 따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(국가

1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(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, 처리,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(이하 “응급의료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야 한다.

1.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
2.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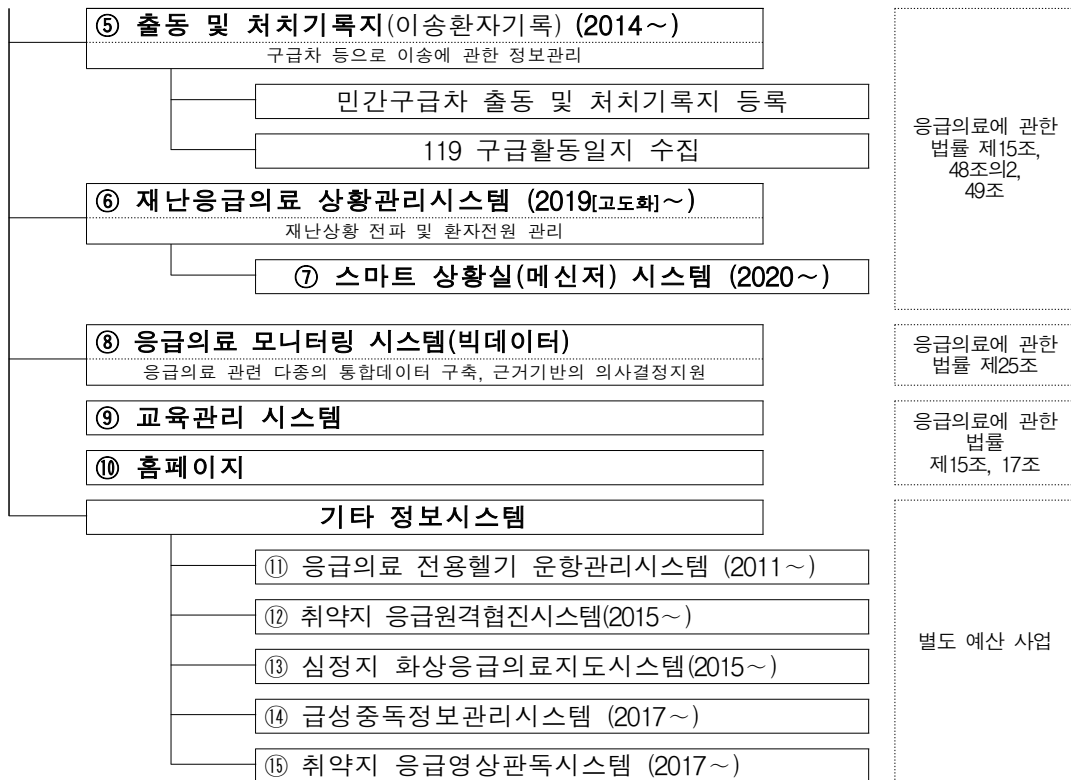
응급진료정보망,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, 재난응급의료 상황관리시스템, 스마트 상황실 메신저 등)을 구축·운영하고 있고, 개정안도 신설 시스템을 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특히, 보건복지부의 “응급의료정보망 구축(정보화)” 사업은 이미 차세대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른 시스템이 기존 정보망을 고도화·활용하는 범위와 별도로 순증되는 소요를 현시점에 구분·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보건복지부는 위 사업에 2026년 기준 88억 3,300만원을 편성하여 아래 [그림 1]과 같은 응급의료정보망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

-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통해 119 이송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응급환자 전원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, 개정안의 응급 이송통합관리시스템이 이러한 기존 기능과 어떻게 연계·조정되는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현시점에 특정하기 어려움

[그림 1]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및 운영 현황





자료: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